

# 해외통관애로

**인도의 무역협정과 FTA 원산지관리 강화**

- 「CAROTAR 2020」 시행 중심으로 -

김한진 | 인도 관세관



김한진  
인도 관세관



## 인도의 무역협정과 FTA 원산지관리 강화 - 「CAROTAR 2020」 시행 중심으로 -

벵갈만과 아라비해를 끼고 인도양의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는 많은 이들에게 'Incredible India'라는 이미지로 먼저 연상되기 마련이다. 그만큼 기나긴 역사를 기반으로 다양한 인종과 종교, 이질적 언어와 문화 관습들이 동시대에 공존하며 서로 작용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조만간 세계 1위 인구대국 자리를 예약한 나라로서 경제적으로 아직 최소생계를 꾸리지 못하는 가구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명목 GDP기준으로는 세계 5위권의 경제대국 반열에 합류한 이후, 모디 정부는 지금도 야심차게 경제성장 패달을 밟아가는 중이다. 국제사회에서의 파워도 과거 '서남아의 맹주국' 수준을 뛰어넘어 세계질서의 메인스트림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글로벌 기업들은 풍부하고 질높은 노동력(전체 인구 13억명, 그중 35세 미만 인구가 65% 차지)과 거대한 시장 잠재력을 기회로 삼아서 대인도 투자와 교역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도 자국 산업 경쟁력과 부의 증진,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통상/관세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 1. 들어가며

인도는 모디정부 출범 이후 연방정부 차원의 화폐 개혁, 세제 통일화,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등 강력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며 세계 경제의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 변모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공급망 제조기지로서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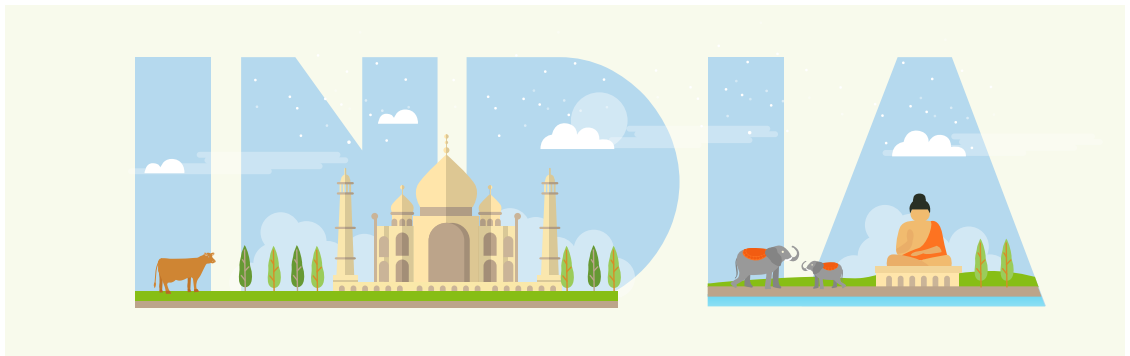
인도의 무역규모는 GDP의 약 40% 수준이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매년 미화 약 8천억불의 상품을 사고팔고 있으나 적자액이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무역불균형이 심하며<sup>1)</sup>, 우리나라와도 매년 200억불을 상회하는 수출입 실적에도 불구하고 100억불 이상의 무역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매년 재정적자와 함께 심각한 무역적자를 겪고 있는 인도의 현실은 인도정부가 경제발전의 모토로 삼고 있는 제조업 육성정책(Make in India)<sup>2)</sup>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 상품의 수입에 대해 보호적 조치를 강화하는 구실을 제공하여 왔다.

즉, 무역 불균형 개선, Make in India를 기치로 하는 제조 산업 경쟁력 지원, 재정수입의 확대 필요 등에 따라 전통적으로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를 폭넓게 시행중이며, 관세국경에서 까다로운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인도의 관세정책은 무역적자 개선과 자립경제 실현이라는 국가적 필요와 맥락을 같이 하여 전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인도정부가 금년에 새롭게 시행한 'FTA 원산지 관리 엄격화' 시책은 대인도 무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특별하므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1) 인도의 무역 (IMF, 억달러)	['19년]			['20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3,193.3	5,167.5	-1,974.2	3,219.4	4,833.0	-1,613.6

2) 인도를 세계 제조업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것으로 모디정권 집권 1기인 2014.9월부터 인도경제의 중점 정책으로 추진되어옴. 우리나라 경제 개발기의 수출진흥정책과 비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 인도 무역협정과 관세정책 반영

인도는 현재 저개발국가 수입물품에 일방적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DFTP(Duty Free Tariff Preference, 34 LDCs)를 운영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와의 CEPA('10.1 발효)를 포함하여 15개의 무역협정<sup>3)</sup>을 체결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인도는 대외개방에 나서면서 FTA 체결에 적극적이었으나 최근 모디 정부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인도 내 FTA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은 인도가 작년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sup>4)</sup>) 참여 보류 결정시 그 사유로 거론되었던 우려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인도는 당시 FTA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여론 역시 만만치 않음<sup>5)</sup>에도 불구하고, RCEP이 타결될 경우에 회원국으로부터 수입 급증(특히 무역적자<sup>6)</sup>)가 심각해지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대량 유입) 우려, 외국산 경쟁물품에 의한 국내 업체 타격 및 'Make in India' 정책 동력 약화, 수입 급증에

대비한 규제 장치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신뢰할 만한 지원책 부족 등 우려를 고려하여 동 메가 FTA 참여에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FTA에 대한 이러한 인식하에서 인도의 심각한 무역적자 개선 및 자립경제 실현을 위해 통상정책을 엄격화하고 'Make in India'를 강화하려는 기조는 '수입물품 원산지관리 엄격화'라는 구체적 관세정책으로 투영되었다.

또한 최대 무역적자 상대국인 중국산 물품이 아세안, 한국, 일본 등 FTA 체결국을 통해 특혜를 적용받아 우회 수입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실질적 원산지 확인'으로 대응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인도 연방정부는 금년 초('20년 2월) 예산안 발표시, '특혜무역 확대가 인도 경제발전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언급하며 원산지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확인과 검증계획을 예고한데 이어, 금년 4월에는 관세법(The Customs Act, 1962)에 28DA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8월에는 「무역협정에 따른 2020년 세관 원산지관리 규정」

3) [인도 양자협정] 스리랑카 FTA('00), 한국 CEPA('10), 일본 CEPA('11), 말레이시아 CECA('11), 네팔('50), 태국 EHS('04), 칠레 PTA('07), 아프카니스탄('13), 싱가포르 CECA('05), 부탄('16)  
[인도 지역협정] : ASEAN('10), APTA('75), SAFTA('06), MERCOSUR('09), GSTP('89)

4)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 참여한 Mega FTA 협상. 19.11.4 인도 제외 15개국 합의

5) 존스홉킨스대 Krishna, 컬럼비아대 Panagariya, 옥스퍼드대 Thakker 교수 등 인도계 경제전문가

6) 2018/19년 기준, 인도 전체 무역중 대중국 비중이 10.3%를 차지(수출 167.5억불, 수입 703.2억불, 적자 535.6억불)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 Rule, 2020 ;

일명 'CAROTAR 2020') 제정과 함께 세관 실행 가이드<sup>7)</sup>를 발표함으로써 실행력을 확보하였다.

### 3. 강화된 원산지관리 내용

인도가 외국과 체결한 각 FTA를 실행하기 위한 국내 규정은 이전에도 존재<sup>8)</sup>하였으나 국가간 협정사항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정도였고, 모든 무역협정에 적용되는 수입물품의 실제 원산지충족 확인을 위하여 인도세관과 이해당사자의 권리·의무와 관련 절차를 마련한 것은 금년 법 규정 정비가 처음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FTA 특혜 관세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원산지 정보 관련 의무를 부여하였는데, 수입 신고 시에 원산지증명번호, 원산지기준, 누적기준 적용여부, 직접 운송 여부 등을 기록하도록 하였고<sup>9)</sup>, 수입자로 하여금 FORM 10이라는 서식에 명시된 정보를 수입 신고전에 보유하도록 하여 세관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자료의 작성에 있어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에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였다

둘째, 일정 조건하에 인도 세관공무원이 검증 없이 특혜거부, 수입자에게 자료 요구, 수출당사국에 검증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출된 원산지 증명서가 협정서식과 불일치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양허되지 않은 품목에 발급된 경우 등에는 세관직원이 특혜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협정 이행상 어찌 보면 당연한 내용으로 기존 집행내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원산지기준 충족에 의심이 있는 경우 세관 직원이 수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10일내에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그동안 원산지증명서 원본 확보와 형식의 적정성 확인에 주로 대응했던 인도 내 수입자와 그와 연결된 FTA 상대국 수출자로서는 새로운 부담이 아닐 수 없다.

7) Guidelines regarding implementation of section 28DA of the Customs Act, 1962 and CAROTAR, 2020 in respect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FTA/PTA/CECA/CEPA) and verification of Certificates of Origin [Circular 38/2020-Customs]

8) 한-인도 CEPA의 경우에는 2009.12.31.'Customs Tariff(Determination Origin of Goods Under the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and The Republic of Korea) Rules, 2009 규정 제정 [Notification No. 187/2009- CUS (N.T.)]

9) 원산지관리규정 제정에 따른 추가항목을 반영하여 수입신고서식이 개정되었으며 '29.21.신고분부터 적용됨

만약 수입자가 10일내에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된 정보가 불충한 경우는 수출국으로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입자가 특혜신청을 포기하거나 원산지 불충족의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수출국의 검증 없이도 특혜를 불허하도록 하였다.

셋째, 통관과정 또는 사후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검증 기간 중에는 특혜 중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수출국 서명/인장 등과 원산지증명서 내용 불일치 등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나, 수입자가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고, 검증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 수입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중지할 수 있고, 검증결과가 회신되지 않거나 검증결과 원산지불충족인 경우는 특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 검증 진행 기간 중에 통관이 필요하다면 관세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잠정평가<sup>10)</sup>(Provisional Assessment) 방법에 따라 수입자의 요청으로 수입자가 세관에 담보(수입자의 Provisional Duty Bond 와 은행의 Guarantee)를 제공하고 통관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규정하였다.

넷째, 원산지 불충족으로 결정된 상품과 동일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동일물품에 대하여 특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원산지 악용방지를 위해 수입자가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진실성 확보에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모든 수입신고서에 대해 통관심사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입자가 신고하거나 보유하여야 할 원산지 관련정보를 명시하는 차원에서 Form 1 이라는 서식을 발표하였다.

동 서식은 3개의 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Sec.1은 작성 요령, Sec.2는 수입자 및 특혜신청물품에 대한 간략한 정보, Sec.3은 수입자가 수입신고전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정보에 관한 것이다.

특히 Sec.3은 2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Part A는 수입품의 생산 공정, 원산지 기준 등 기록해야 할 정보에 관한 것이고, Part B는 물품의 원산지기준이 완전생산이 아닌 경우에 수입품과 재료에 대하여 기록해야 할 최소정보에 관한 것이다.

다만, 인도의 관세청 격인 CBIC(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는 CAROTAR 시행 전후 여러 차례의 세미나와 자료를 통해, Form1은 수입 신고시에 의무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세관이 원산지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수입자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것

10) 인도 관세법 제18조 : 신고자가 납부액 자체평가(Self Assessment)를 할 수 없어 세관에 신청하는 경우, 화학분석이나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 세관에 자료나 정보가 미제출 되어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자료나 정보가 제출되었으나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은 잠정평가(Provisional Assessment)하여 통관할 수 있음을 규정

이며, 수입자에게 요구되는 정보는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 수준으로서 원가나 영업비밀과 같은 자세한 정보는 수입자가 인도세관에 필수적으로 제출할

정보가 아닌 인도세관이 수출국 세관(검증)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 4. 맺음말

인도는 거대한 시장과 제조기지로서 매력 있는 곳 이기는 하지만 수출입을 통해 이러한 기회를 점유 하는데 녹록치 않은 규제 조치들을 넘어서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인도의 원산지관리 엄격화 정책은 무역협정에 따른 실질적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수입물품에 대하여만 특혜를 부여하겠다는 인도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는 하나, 다른 국가에 비하여 FTA 특혜건 수입자에게 부담이 되는 강력한 의무를 부여한 점, 인도 전역의 세관과 무역업계가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되었다는 점, 동 제도의 시행 시기가 비대면 통관심사(Faceless Assessment)<sup>11)</sup> 라는 인도의 커다란 통관제도 변혁과 맞물려 진행되었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시행 초기에 인도 내 세관과 수입자는 물론 FTA 체결국의 공급망 당사자들에게도 비용과 리스크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의 변화된 수출입 환경 및 원산지관리 체계 하에서 한-인도 CEPA의 원활한 이행과 관세특혜의 충분한 활용을 위해서는 인도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안정화 노력도 중요하겠으나, 원산지상품 충족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자료 준비, 인도 내 수입자 또는 세관의 요구에 협정과 규정에 맞게 살피 대처하는 등 기업들의 지혜로운 대응도 요구되며, 정부 차원에서도 인도정부의 동향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모니터링 하며 협정에서 정한 관세특혜의 활용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 신고물품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통관자동화시스템(ICEGATE)에서 신고서를 자동 배부받은 원격지 세관직원이 전자적으로 제출된 서류에 기반하여 비대면/비접촉/무서류 방식으로 통관심사 수행. CBIC는 통관의 일관성, 익명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6.5부터 부분 도입 후 10.31.전국 시행중이나, 통관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자료 요구/제출 절차가 진행되므로 대면심사에 익숙한 인도세관과 수입자 양측 모두가 적응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